

일시 : 2018. 7. 4 (수) 16시-17시

장소 : 올림픽공원내 센터코트 2층 회의실

2018년도

제6차 이사회 회의록

2018. 7. 4 (수)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

목 차

I. 보고 안건1-9

1. 전차 이사회 초록 보고의 건 1
2.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2
3. 국가대표 선수 교체 보고의 건 3
4. 임원 사임 보고의 건 4
5. 미디어월 소송 변론종결에 따른 소송진행 보고의 건 5-9

II. 심의 안건10

- 미디어월 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 10

III. 기타 안건11

I. 보고 안건

1 전차 이사회 초록

- 2018년 6월 5일에 개최된 제5차 이사회는 임원 25명 중 16명이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되었습니다.
- 성원된 2018년도 제5차 이사회에서 보고안건으로 전차 초록 보고와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 공인검정사업 공인결과 보고의 건, 회계직원 채용 보고를 진행하였고,
- 심의안건은 총 6건으로 마케팅 사업 위탁 운영 심의의 건, 마케팅 사업 위탁업체 (대행사) 선정 심의의 건, 협회 경기용품 및 시설 공인규정 개정 심의의 건, 임원 보선 심의의 건,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포상금 지급 심의의 건, 공인검정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 심의의 건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으며
- 기타 안건으로 심의, 의결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2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의 건

가. 보고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각종 위원회 활동(6.1-7.3일까지) 현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내용

- 붙임. 각종 위원회 활동 보고

3

남자국가대표 선수 교체 보고의 건

우리 협회에서는 남자국가대표 선수 교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보고 사항

우리 협회에서는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7조 ②항에 의거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남자 국가대표선수를 교체함에 따라 이사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 관련규정

대한테니스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 제17조(선발기준)

- ① 해당 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기준은 최소 연 1회 이상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부상, 경기력 부진 등 결원에 따른 교체 시 감독 추천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전 최종성적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위원장 또는 지도자 추천에 따른 선발은 최소화하며, 이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나. 보고 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개최와 관련하여 정현 선수의 부상과 송민규 선수의 경기력 저하에 따라 제6차 경기력향상위원회(2018.6.18)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이 교체하여 대한체육회 보고를 완료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남자국가대표 기존 명단 : 정현, 송민규, 권순우, 임용규, 홍성찬, 김영석
- 남자국가대표 교체명단 : 이덕희, 이재문, 권순우, 임용규, 홍성찬, 김영석

※ 선발 사유

- 이덕희 선발 사유 - 국내랭킹2위로 단식기용
- 이재문 선발 사유 - 최근 경기력 상승으로 복식기용

4 임원 사임 및 보직 변경의 건

가. 보고 내용

최영자 이사가 일신상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임하였고, 경기이사 보직인 정희성 이사의 사임에 따라 보직을 변경하였음.

나. 사임임원

성명	직위	비고
최영자	이사	

다. 이사 보직변경 사항

해당보직	성명	비고
경기이사	전영식 이사	정희성 이사 사임에 따른 보직 변경

5 미디어월 소송 변론종결에 따른 소송진행 보고의 건

가. 보고사항

미디어월 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따른 진행현황을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미디어월 30억 소송과 관련하여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판결선고기일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변론 현황

일자	내용	결과
2017.06.20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0:50)	속행
2017.08.25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1:20)	속행
2017.10.20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1:20)	속행
2017.11.24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0:15)	속행
2018.01.12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4:20)	속행
2018.03.23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5:00)	기일변경
2018.05.11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6:30)	속행
2018.06.22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0:05)	변론종결
2018.07.20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410호 09:50)	

2) 소송 세부진행 현황

일자	내용	결과
2017.03.24	소장접수	
2017.03.2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문희찬 접수증명	2017.03.24 발급
2017.03.27	참여관용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	
2017.03.27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보정명령(인지대,송달료)등본 송달	2017.04.04 0시 도달
2017.04.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납부확인서 제출	
2017.04.11	피고 사단법인 대한테니스협회에게 소장부분/소송안내서/답변서요약표 송달	2017.04.13 도달
2017.05.1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소송위임장 제출	
2017.05.10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답변서 제출	
2017.05.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답변서 부분(17.05.10.자) 송달	2017.05.10 도달
2017.05.11	보정권고(피고용)	
2017.05.1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보정권고(피고용) 송달	2017.05.12 도달
2017.05.3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7.05.31 도달
2017.05.3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변론기일통지서 송달	2017.06.01 도달
2017.05.3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청사이전안내문 송달	2017.06.02 도달
2017.05.3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청사이전안내문 송달	2017.06.01 도달
2017.06.0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준비서면 제출	
2017.06.0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준비서면부분(17.06.01.자) 송달	2017.06.07 도달
2017.06.20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0:50)	속행
2017.08.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준비서면 제출	
2017.08.2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준비서면 제출	
2017.08.2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준비서면부분(17.08.23.자) 송달	2017.08.24 도달
2017.08.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준비서면부분(17.08.23.자) 송달	2017.08.24 도달
2017.08.2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7.08.2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8.2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사실조회신청서 제출	
2017.08.25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1:20)	속행
2017.08.25	육군사관학교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7.08.30 도달
2017.08.25	구리시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7.08.25 도달
2017.08.25	검찰청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게 문서송부촉탁서(인증등본) 송달	2017.08.28 도달

일자	내용	결과
2017.09.25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7.09.27	법원 서울동부지법에게 문서송부촉탁서(인증등본) 송달	2017.10.10 도달
2017.10.16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7.10.1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서증 제출	
2017.10.19	감사원에게 문서송부촉탁서 송달	2017.10.23 도달
2017.10.19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7.10.19.자) 송달	2017.10.19 도달
2017.10.20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1:20)	속행
2017.10.24	육군사관학교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2017.10.30	감사원 문서송부서 제출	
2017.11.0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문서송부촉탁 신청서 제출	
2017.11.10	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문서송부서 제출	
2017.11.13	피고대리인 김동훈 김영진 추세정 윤현준 이원표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1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송부촉탁문서 도착 통지서 송달	2017.11.16 도달
2017.11.14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송부촉탁문서 도착 통지서 송달	2017.11.15 도달
2017.11.15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에게 문서송부촉탁서(인증등본) 송달	2017.11.17 도달
2017.11.17	원고대리인 문희찬 한상혁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7.11.22	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문서송부서 제출	
2017.11.2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거설명서 제출	
2017.11.2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서증 제출	
2017.11.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준비서면 제출	
2017.11.2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준비서면 제출	
2017.11.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거설명서(17.11.23.자) 송달	2017.11.23 도달
2017.11.23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7.11.23.자) 송달	2017.11.23 도달
2017.11.23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준비서면부분(17.11.23.자) 송달	2017.11.23 도달
2017.11.24	사실조회확인 구리시 사실조회회신 제출	
2017.11.24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0:15)	속행
2017.11.24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준비서면부분(17.11.23.자) 송달	2017.11.24 도달
2017.11.24	구리시에게 사실조회서독촉 송달	2017.11.24 도달

일자	내용	결과
2018.01.09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소송고지신청서 제출	
2018.01.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증인신청서 제출	
2018.01.10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소송고지서(18.01.09.자) 송달	2018.01.11 도달
2018.01.10	피고지인 대한민국 (소관:육군사관학교)에게 소송고지서 송달	2018.01.12 수취인불명
2018.01.10	피고지인 경기도 구리시에게 소송고지서 송달	2018.01.11 도달
2018.01.1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사실조회신청서(육군사관학교) 제출	
2018.01.1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서증 제출	
2018.01.1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거설명서 제출	
2018.01.1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8.01.11.자) 송달	2018.01.11 도달
2018.01.1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거설명서(18.01.11.자) 송달	2018.01.11 도달
2018.01.11	육군사관학교에게 사실조회서 송달	2018.01.12 도달
2018.01.12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4:20)	속행
2018.01.3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소송고지신청서 제출	
2018.02.0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소송고지서(18.01.31.자) 송달	2018.02.10 0시 도달
2018.02.02	피고지인 대한민국 (소관:육군사관학교)에게 소송고지서 송달	2018.02.07 도달
2018.03.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증인신문사항 제출	
2018.03.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증인신문사항(18.03.21.자) 송달	2018.03.22 도달
2018.03.2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2018.03.22	기일변경명령	
2018.03.2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8.03.28 도달
2018.03.22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김영진,추세정,윤현준,이원표에게 변경기일통지서 송달	2018.03.23 도달
2018.03.23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5:00)	기일변경
2018.05.0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거설명서 제출	
2018.05.0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서증 제출	
2018.05.0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인신청서(양종수) 제출	
2018.05.08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인신문사항 제출	
2018.05.0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거설명서(18.05.08.자) 송달	2018.05.09 도달
2018.05.0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8.05.08.자) 송달	2018.05.09 도달
2018.05.0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인신문사항(18.05.08.자) 송달	2018.05.09 도달
2018.05.11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6:30)	속행

일자	내용	결과
2018.06.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문희찬 준비서면 제출	
2018.06.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거설명서 제출	
2018.06.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서증 제출	
2018.06.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증거설명서 제출	
2018.06.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서증 제출	
2018.06.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김영진 준비서면 제출	
2018.06.21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면 담당변호사 김동훈, 김영진, 추세정, 윤현준, 이원표에게 준비서면부분(18.06.21.자)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거설명서(18.06.21.자)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8.06.21.자)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증거설명서(18.06.21.자)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서증(18.06.21.자)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1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정세 담당변호사 문희찬, 한상혁에게 준비서면부분(18.06.21.자) 송달	2018.06.21 도달
2018.06.22	변론기일(민사법정 410호 10:05)	변론종결
2018.07.20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410호 09:50)	

Ⅱ. 심 의 안 건

1 미디어윌 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따른 의견 수렴의 건

가. 의결주문

미디어윌 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따른 의견 수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 의결코자 함.

나. 제안사유

우리 협회에서는 협회 정관 제14조 2항 8호에 의거하여 미디어윌 소송 판결선고기일에 대해 의견수렴후 의결코자 함

※ 관련규정 : 제1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② 협회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8. 기타 중요사항

다. 내용

우리 협회에서는 미디어윌과의 30억 소송과 관련하여 변론이 종결됨에 따라 판결선고기일이 2018.7.20(금)에 진행예정이며, 판결결과 대응을 위해 의견 수렴하여 대책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미디어윌에서는 협회는 피해보는 것이 없으며 부가세환급금 및 운영수익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함.

판결선고기일	내용	결과
2018.07.20	판결선고기일(민사법정 410호 09:50)	

라. 의결 사항

미디어윌에서는 협회는 피해보는 것이 없으며 부가세환급금 및 운영수익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법원에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협회는 승소하였을 경우 현재 미지급된 부가세환급금 및 운영수익금등을 차감하고 돌려주고자 하며, 육사코트 또한 미디어윌과 맺은 육사코트 운영협약서에 의거하여 처리토록 함.

Ⅲ. 기 타 안 건

기타사항으로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